



로 있으며, 우리군 재정의 자율성 신장을 위하여 인상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나 타 지방자치단체와 형평성 차원에서 신중하게 심사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.

**5. 질의 및 답변 : 없음**

**6. 토 론 : 없음**

**7. 수정안의 요지**

- 개인균등할 주민세 세율에 관하여 개정안(3,000원→5,000원)을 수정안(5,000원→4,000원)으로 조정(안 제20조제1항제1호)

**8. 심사결과**

- 2004. 8. 17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

의안번호	제 869 호
의 결 년 월 일	2004. 8. 25. (제117회)

의 결 사 항	수정가결
------------	------

##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

제 출 자	고 성 군 수
제출년월일	2004. 7. 3.

#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869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4. 7. 3.

제 출 자 : 고성군수

## 1. 개정이유

자치단체 구성원에 대한 회비적 성격의 개인균등할 주민세는 징수비용에도 못 미치는 세목이므로 세율을 인상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개인균등할 주민세 3,000원을 4,000원으로 인상(안 제20조제1항제1호가목)

## 3. 참고사항

- 지방세법 제3조(지방세의 부과·징수에 관한 조례)
- 지방세법 제176조 제1항 제1호 가목
- 입법예고 : 고성군 공고제2004 - 197호(2004.6.7 ~ 6.28.)  
⇒ 의견 제출사항 없음

## 4. 본문 : 붙임참조

고성군조례 제 호

## 고성군세조례증개정조례안

고성군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안 제20조제1항제1호 가목중 “3,000원”을 “4,000원”으로 한다.

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0조(세율)①균등할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p>1. 개인</p> <p>가.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: <u>3,000원</u></p> <p>나. (생략)</p> <p>2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20조(세율)①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---</p> <p>가. ----- <u>4,000원</u></p> <p>나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